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,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이 개정(‘23.10.19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, 개선 요청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조항을 삭제함(제18조제4항 삭제)
- 나. 법률에서 위임한 영향평가 실시 기한을 구체화함(제35조제1항)
- 다.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영향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규정함(제35조제5항)
- 라. 국가기관등의 장이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시하는 시기를 구체화함(제35조제8항, 제9항)
- 마. 영향평가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기존 규정이 재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(제35조제3항, 제4항, 제6항, 제7항)

- 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 담당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35조의2 제1항)
- 사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35조의2 제2항)
- 아.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선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'를 구체화 함(제35조의2 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 전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43조제1항에 다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35조제1항제2호 중 “하기”를 “하기 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영향평가 대상”을 각각 “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향평가”를 “영향평가 및 재평가”로 한다.

②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전까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

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
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
2. 제1항제2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
3.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

제35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영향평가를”을 “영향평가 및 재평가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영향평가 결”을 “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영향평가”를 “영향평가 및 재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한다.

⑧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기 최소 10일 이전에 결과서를 공시해야 한다.

⑨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공시해야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결과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법 제43조제5항의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방·외교·치안·전력 등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,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및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
3.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과 통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의 실시) ① ~ ③ (생략)	제18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의 실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	<삭제>
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	④ 법 제21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
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,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표지의 서식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제4항 ----- ----- -----.
제35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	제35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) ① 법 제43조제1항에 다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(이하
“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”라
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
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.

1. (생략)
2.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: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
3. (생략)
- <신설>

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.

1.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
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
발·유통·운영·유지 및 관
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하기 30일
--
3. (현행과 같음)
- ②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전까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- ③ -----
----- 영향평가 및 재평가-----

-----.

1. 영향평가 및
재평가 대상-----

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

2.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
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
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

3.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
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
성 및 공공성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
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
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
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
업 영향평가 결과서(이하 이 조
에서 “결과서”라 한다)를 작성
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제1호
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
가를 실시하여 결과서를 작성한
경우에는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
한다.

<신 설>

2. ----- 영향평가 및
재평가 대상-----

3. ----- 영향평가 및
재평가 대상-----

- ④ -----
----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--

- . <후단 삭제>
-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
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
라 작성한 결과서를 과학기술정
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
다.
1.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향평가

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(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를 실시한 사업

2. 제1항제2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

3.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

⑥ -----
----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-----

-----.

⑦ -----
----- 영향평가 및 재평가-----

-----.

⑧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기 최소 10일 이전에 결과서를 공시해야 한다.

<신 설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⑨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공시해야 한다.

⑩ ----- 제9항-----

-----.

제35조의2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결과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국

가기관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법 제43조제5항의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방·외교·치안·전력 등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,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및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

3.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과 통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
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334